

신구조문대비표  
「대외무역법」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대외무역법</b> [법률 제17072호, 2020. 3. 18., 일부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대외무역법</b> [법률 제18885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</p>
<p><b>제33조(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) ① ~ ③ (생략)</b></p> <p>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<b>판매업자</b>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b>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.</b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부터 <b>제4항</b>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<b>물품등</b>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<b>서류를 검사</b>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	<p><b>제33조(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<b>판매업자</b>는 <b>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b>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.</b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부터 <b>제4항(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b>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<b>물품등(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“국내생산물품등”으로 본다)</b>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<b>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</b>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5조(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)</b>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<b>물품등(이하 이 조에서 “국내생산물품등”이라 한다)</b>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5조(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)</b>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<b>물품등(이하 “국내생산물품등”이라 한다)</b>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b>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1호부터 제3호”는 “제1호”로, “원산지표시대상물품”은 “국내생산물품등”으로 본다.</b></p>
<p><b>제37조(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) ①</b>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<b>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</b>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37조(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) ①</b>수출 물품 또는 <b>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</b>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<b>제53조의2(벌칙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1의2.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</p> <p>2.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</p> <p>3.4. (생략)</p>	<p><b>제53조의2(벌칙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2. 제33조제4항 각 호(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</p> <p>3.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5조(미수범)</b> 제53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·제4호·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의2·제2호·제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.</p>	<p><b>제55조(미수범)</b> 제53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·제4호·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·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/p>
<p><b>제56조(과실범)</b>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<b>제56조(과실범)</b>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